쇼핑카트 부속서 12

(Shopping Trolleys)

1. **적용범위** 쇼핑카트란 소비자가 백화점, 슈퍼마켓, 할인점, 쇼핑센타 등에서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을 넣고 직접 밀어서 운반할 용도로 사용되는 손수레를 말한다.
다만, 어린이 전용 및 장애인 전용으로 제작된 것, 바스켓의 용량이 80 L 이하인 것, 바스켓을 탈착하는 구조의 것, DIY(Do It Yourself) 매장 전용의 것, 상품을 운반하는 용도 외의 부가적인 특수한 기능(이용자가 앉을 수 있는 보조의자가 부착되어 있거나 바퀴의 구름성을 조절하여 운동기능을 부여한 것 등)이 있는 것, 동력을 이용하는 것, 공항, 터미널 등에서 가방 및 짐 등을 운반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짐받이용과 점포내의 작업 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비 고 이 기준은 어린이를 태울 수 있는 쇼핑카트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10 쇼핑카트 부속품의 안전요건도 만족하여야 한다.

2. **관련표준** 다음의 표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서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
KS B ISO 2768-1 일반공차-제1부 개별 공차 표시가 없는 선형 치수 및 각도치수에 대한 공차
KS B ISO 2768-2 일반공차-제2부 개별 공차 표시가 없는 항목에 대한 기하학적 공차
KS D 9502 염수분무시험

3. **용어 및 정의**
3.1 **A 형태 쇼핑카트** 어린이를 태우는 장치가 없으며 물건을 실을 수 있는 바스켓과 캐스터를 장착한 하부구조와 핸들로 구성된 쇼핑카트([그림 1] 참조)를 말한다.

[그림 1]

3.2 **B 형태 쇼핑카트** 어린이를 태우는 장치가 있으며 물건을 실을 수 있는 바스켓과 캐스터를 장착한 하부구조와 핸들로 구성된 쇼핑카트([그림 2] 참조)를 말한다.

[그림 2]

3.3 AK 형태 쇼핑카트 3.1의 A형에 유아를 태울 수 있는 시설물이 부착된 쇼핑카트([그림 3] 참조)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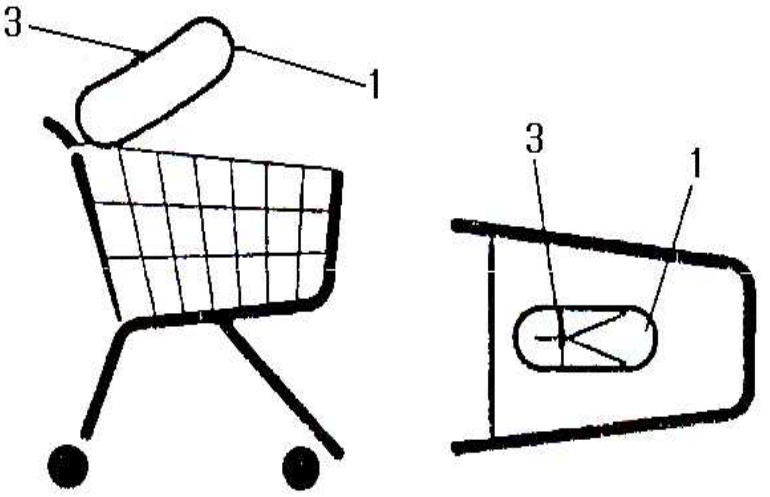

옆 면 위 면

1. 유아를 태우는 시설물(요람)
3. 공급자적합성확인밸트

[그림 3]

3.4 BK 형태 쇼핑카트 3.2의 B형에 한명의 추가 유아를 태울 수 있게 시설물이 부착된 쇼핑카트([그림 4] 참조)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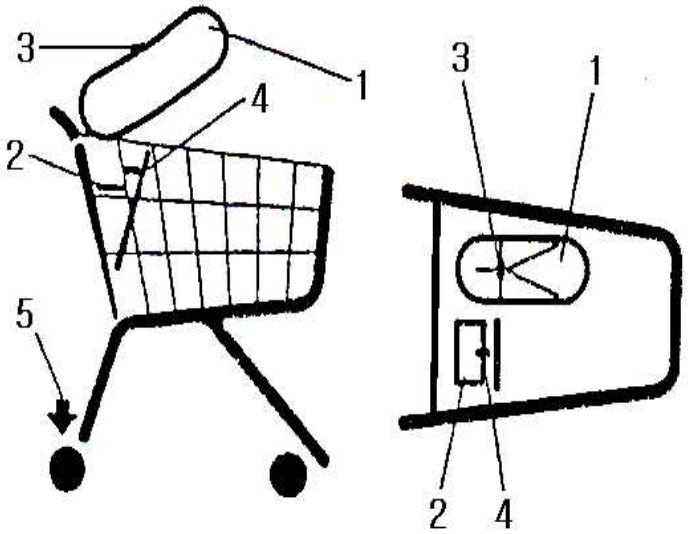

1. 유아를 태우는 시설물(요람)
2. 어린이를 태울 수 있는 시설물
3. 공급자적합성확인벨트
4. 공급자적합성확인벨트
5. 고정장치

[그림 4]

3.5 **핸들(handle)** 쇼핑카트를 움직이게 하는데 쓰이는 부분([그림 5] 참조)을 말한다.
3.6 **베이스(base)** 캐스터가 장착된 부분이며 바스켓을 지지하는 부분([그림 5] 참조)을 말한다.
3.7 **캐스터(caster)** 하부구조나 그 외 다른 부분에 장착된 움직이는 바퀴부분을 말한다.
비 고 캐스터의 장착은 하부구조에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장착하거나 고정시킬 수 있다.
3.8 **바스켓(backrest)** 물건을 넣어 실을 수 있는 부분([그림 5] 참조)을 말한다.
3.9 **등판(backrest)** 유아가 앉아 있을 때 등이 닿는 부분을 말한다.
3.10 **네스팅 프랩(Nesting Flap)**
3.10.1 **일반 네스팅 프랩** 상품이 바스켓에서 나가지 않도록 하는 바스켓 뒤에 있는 움직이는 판(그림 5 참조)을 말한다.
3.10.2 **어린이 의자가 있는 네스팅 프랩** 상품이 바스켓에서 나가지 않도록 하는 바스켓 뒤에 있는 움직이는 판이며 어린이를 태울 수 있도록 의자와 등받이가 있는([그림 5] 참조)것을 말한다.
3.11 **요람** 유아를 태울 수 있는 시설물([그림 4] 참조)을 말한다.
3.12 **공급자적합성확인벨트** 유아, 어린이를 태우는 장치에 유아, 어린이를 고정시키는 장치([그림 2, 3, 4] 참조)를 말한다.
3.13 **고정장치** 캐스터의 움직임을 멈출 수 있는 장치([그림 4] 참조)를 말한다.
3.14 **쇼핑카트 용량** 바스켓의 용량은 제조사에 의하여 기입된다.
3.15 **바스켓 용량 계산** 용량계산은 5.2에 의한다.
3.16 **바스켓 명목상 적재하중** 킬로그램에 의한 적재하중은 수치상으로 계산된 바스켓 볼륨과 같아야 한다.
비고 : 이는 평균적인 적재밀도가 실질적으로 1 kg/dm^3 같다고 전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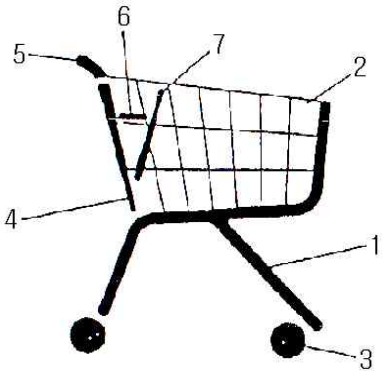

1. 베이스
2. 바스켓
3. 캐스터
4. 네스팅 플랩
5. 핸들
6. 유아의자
7. 등판

[그림 5]

4. 공급자적합성확인요건

4.1 일반사항

4.1.1 겉모양

4.1.1.1 사용시 노출부분이나 쉽게 손이 닿을 수 있는 부위에 다치거나 상처를 줄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이나 모서리 등이 없어야 한다.

4.1.1.2 어린이를 태우는 형태의 쇼핑카트는 어린이를 끼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어떠한 부분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4.1.1.3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 상해를 줄 수 있는 돌출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4.1.1.4 부속품은 사용상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성을 손상하지 않아야 한다.

4.1.1.5 모든 방향에서 90N의 하중을 가했을 때 이상 없이 기능을 유지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4.1.1.6 어린이를 태우는 부분은 반드시 바스켓 안에 있어야 한다.

4.1.1.7 바스켓 내 식품의 위생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질이 없어야 하며 철소지를 사용한 것은 도장, 도금 등 기타의 방청처리를 하여 변질 및 청소가 용이하여야 한다.

4.1.1.8 쇼핑카트 하부구조 전면은 사용 상태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적어도 반경 5mm 이상 둥글게 처리되어야 한다.

4.1.1.9 유아, 어린이를 태우는 장치에 공급자적합성확인벨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4.2 구조

4.2.1 **쇼핑카트의 폭 바퀴를** 진행방향으로 맞추었을 때 악세사리를 포함하여 폭이 750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2.2 **핸들높이** 핸들의 그립은 바닥에서 850 mm에서 1150 mm 사이에 위치해야한다.

4.2.3 하부구조의 가장 낮은 부분과 바닥까지의 공간은 100 mm 이상이어야 한다.

4.2.4 **인체의 다리공간** 핸들 밑에 어떠한 부속도 없는 공간이 존재하여야 하며 이 공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그림 6] 참조).

- 뒷바퀴 사이
- 핸들 바로 밑의 수직인 공간
- 쇼핑카트 방향으로 5° 정도 기울어진 경사면이며 핸들과 접해있는 부분
- 바닥에서 600 mm 아래에 있는 수평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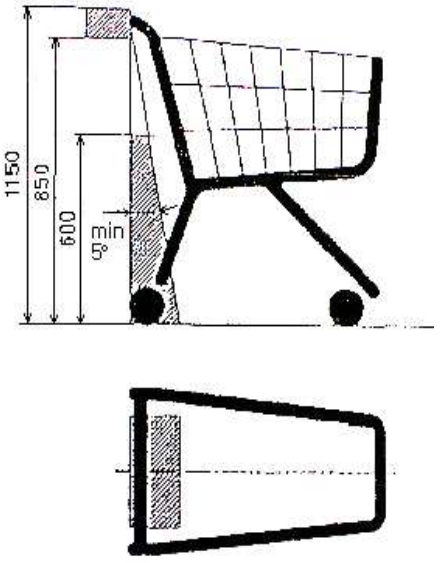

[그림 6] 다리공간

4.2.5 구름성(Rolling Quality)

4.2.5.1 쇼핑카트는 최소 4개의 캐스터가 장착되어야 하며 그중 최소 2개는 회전하여야 한다.

4.2.5.2 휠의 지름은 최소 75 mm 이상이고 보호대 혹은 비슷한 장치로 장착되어야 한다.

4.2.5.3 각각의 캐스터는 같은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각 지탱하중은 최소 쇼핑카트 총 적재용량의 25 % 이상이어야 한다.

(총 적재용량 = 쇼핑카트무게 + 적재하중)

4.2.6 내스팅 핸들의 손가락이 앞에 있는 왜건의 핸들부위에 끼이지 않아야 한다.

4.2.7 틈 사용 중인 어린이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움직이는 부분이나 틈이 없어야 한다.

4.2.8 좌석 앞쪽 하부 B형 및 BK형은 어린이가 다리를 늘어뜨려 설 수 있는 프레임이 없어야 한다.

4.2.9 대퇴 프레임 B형 및 BK형은 좌석위치에 어린이의 신체가 앞쪽 방향으로 전도되지 않도록 보호틀 및 대퇴 프레임을 갖추어야 한다(단, 대퇴 프레임에는 폭 40 mm 이상의 틈이 없어야 한다).

4.2.10 좌석의자 등받이 B형 및 BK형은 좌석의자 등받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최상부까지의 높이가 200 mm 이상이고 의자등받이 높이는 100 mm 이상이어야 한다.

4.2.11 앞쪽 보호틀 B형 및 BK형의 좌석 앞쪽 보호틀 높이는 좌석 앞쪽 부위에서 160 mm 이상 이어야 한다.

4.2.12 측면 보호틀 B형 및 BK형은 좌석상의 어린이 신체가 옆쪽으로 전락하지 않게 측면 보호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2.13 이음새 부분 바스켓 전면부 및 하단구조 전면부에는 각진 부위가 없고 용접 이음새 부분이나 프레임 등의 절단부위가 없어야 하고 쉽게 빠지지 않는 보호커버를 갖추어야 한다.

4.2.14 하단구조 전면 앞쪽 보행자의 발을 다치지 않게 범퍼가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하단구조 전면이 둥근 모양 또는 타원 모양이거나 전방 캐스터 뒤쪽에 하단구조 전면이 위치하면 제외할 수 있다.

4.2.15 하부구조의 앞부분 5.9항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4.3 성 능

4.3.1 하부구조 강도 **[그림 7]**에 따라 각 부위에 500 N의 힘을 가했을 때 변형치수가 5 mm 이하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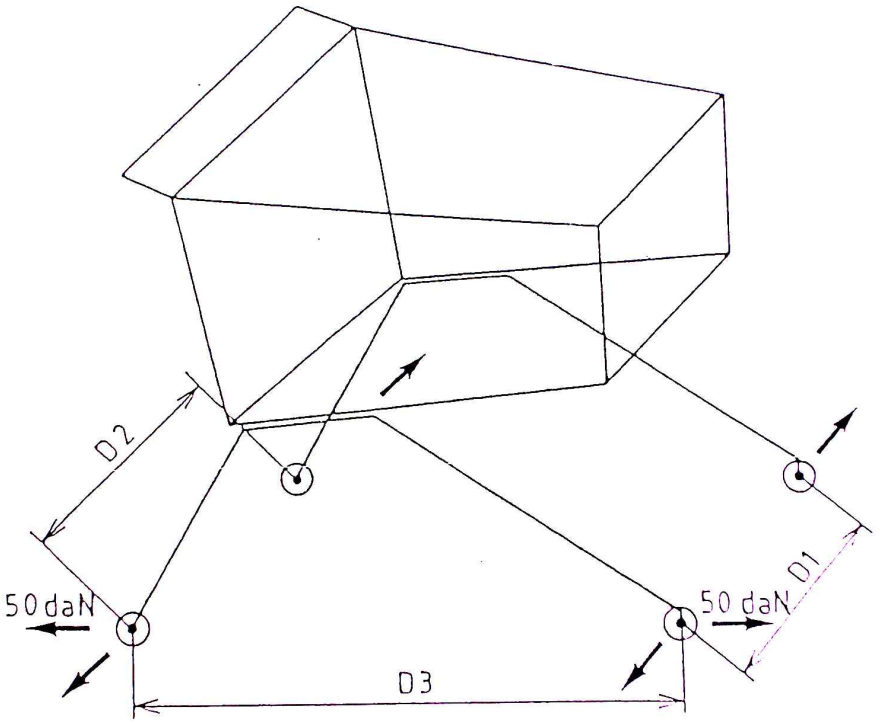

-D_1 은 앞바퀴의 간격

-D_2 은 뒷바퀴의 간격

-D_3 은 앞바퀴 중심과 뒷바퀴 중심 간의 거리를 재어 측정한다.

[그림 7] 하부구조 강도

4.3.2 바스켓 용 500 N험방법 **5.2**에 따라 시험시 기재된 쇼핑카트의 용량 , 500 N산된 바스켓 용량과의 차는 ± 5 % 이내이어야 한다.

4.3.3 바스켓 벽 충돌시험 시험방법 **5.5**에 따른 10 kg의 충격체를 1 m에서 낙하충격시 바스켓의 앞면과 옆면에 40 mm 이상의 변형이 없어야 하며 용접 부위 포함 어떠한 부분도 파손이 없어야 한다.

4.3.4 어린이를 태우기 위한 필요사항(B 및 BK 형태 쇼핑카트)

4.3.4.1 기하학상의 특성 어린이가 앉는 시트와 뒤판과의 각도는 90° ~ 120° 사이 이어야 한다.

4.3.4.2 의자

4.3.4.2.1 의자의 표면은 부드럽고 끊어짐이 없어야 한다.

4.3.4.2.2 의자는 폭 240mm 이상, 길이 130mm 이상이어야 한다(**[그림 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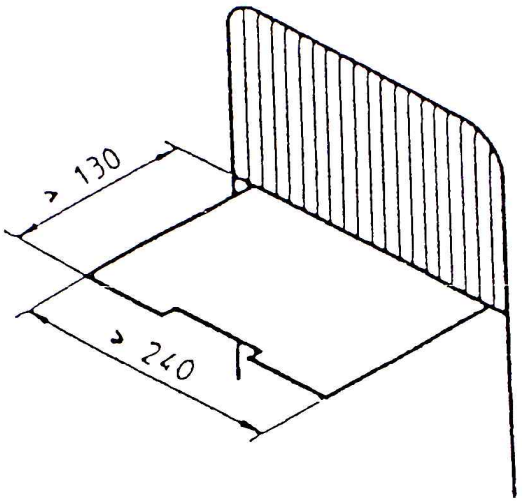

[그림 8] 의자

4.3.4.3 등판 등판은 높이 200 mm 이상, 폭 300 mm 이상이어야 한다(**[그림 9]** 참조). 단, 등판지지대가 오픈상태일 경우 오픈상태의 최소폭은 60 mm 이하 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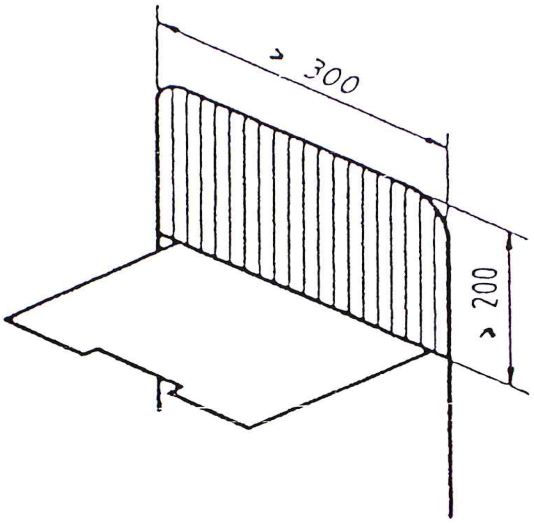

[그림 9] 등판

4.3.4.4 어린이 다리 나오는 곳 뒤판은 반드시 다리가 나올 수 있게 2개의 통로가 있어야 하며 높이 110 mm 이상, 폭 110 mm 이상 이어야 하며 각각 다리사이 통로 간격은 (20 ~ 40) mm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그림 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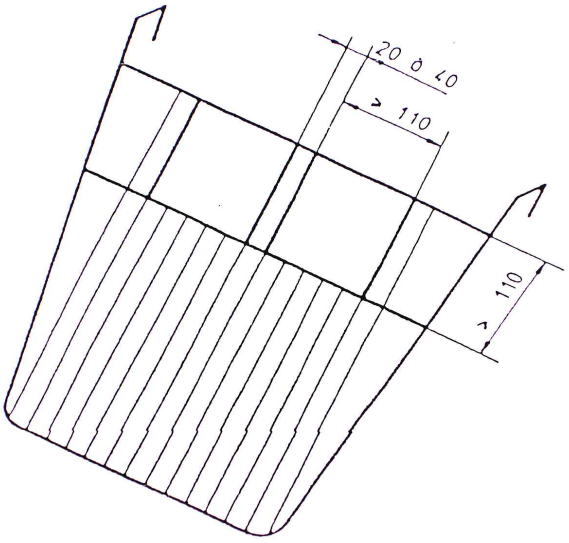

[그림 10] 다리 나오는 곳

4.3.5 쇼핑카트 적재용량

4.3.5.1 적재용량 측정 시험방법 5.3을 하기 위한 적재는 바스켓의 기재된 최대 허용한계의 1.5배를 적재하여야 한다.

4.3.5.2 적재시 강도 4.3.5.1에서 정의한 적재한 경우의 쇼핑카트 강도 시험 시 A와 B([그림 11] 참조) 변형치수는 7 mm 이하이며 쇼핑카트 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A와 B의 치수는 쇼핑카트 중간지점에서 측정한다.

[그림 11] 적재한 경우의 강도

4.3.5.3 내구성 시험방법 5.7에 따라 시험 후 쇼핑카트의 어느 부분이나 부속 조립 등의 파손이 없어야 하며 쇼핑카트를 움직이는데 드는 힘은(시험방법 5.8) 78 N 이하이고 바퀴의 지름은 최초의 지름에서 90 % 이상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3.6 안정성 시험방법 5.4에 따라 시험 후 가로, 세로 방향의 진행에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4.3.7 유아 및 어린이 최대 탑승한계 유아 최대 탑승한계는 9 kg, 어린이 최대 탑승한계는 15 kg 이며 쇼핑카트에 정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4.3.8 쇼핑카트 작동 시 필요한 힘 쇼핑카트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최대한의 힘은 65 N 이하이어야 한다(**시험방법** 5.8 참조).

4.3.9 캐스터 장착부위의 충격강도 시험 시험방법 5.10에 따라 시험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4.3.10 부식성 철로 된 모든 표면은 부식방지 처리가 되어야 한다(**시험방법** 5.11 참조).

4.3.11 유아 및 어린이를 태울 수 있는 장치와 관련된 쇼핑카트의 공급자적합성확인 요구사항

4.3.11.1 안정성 유아를 대신할 실린더는 유아를 태우는 시설물의 중앙에 위치하여야 한다. 유아를 태우는 시설물의 세로축은 유아를 태우는 시설물의 경사와 직각을 이루어야 한다. 쇼핑카트는 평평한 면에 놓여져야 하며 이로써 테스트 실린더의 최종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테스트 실린더는 그 위치에 묶인다. 시험방법 5.4에 따라 시험시 가로, 세로 방향으로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4.3.11.2 유아를 태우는 시설물의 위치 시험방법 5.12에 따라 시험 시 경사도가 10° ~ 45° 이내이어야 한다.

4.3.11.3 내구성 5.7에 따른 방식으로 하며 요람의 허리 지지대에는 1.5 kg/dm^{3}의 밀도를 가진 자갈들로 채워진 9 kg의 백을 대칭적으로 실어 시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4.3.11.4 고정장치 BK형태의 쇼핑카트는 내구성 시험 후 물건을 적재한 쇼핑카트의 고정장치는 이상이 없어야 하며 고정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5.8에 따른 시험 시 움직이는데 100 N 이상의 힘이 들어야 한다.

5. 시험방법

5.1 일반적인 사항 모든 시험은 새로 제작되어지고 완전한 쇼핑카트로 시험하여야 한다.

5.2 바스켓 용량측정

참조 용량측정에 있어 바스켓은 삼각체의 기둥을 절단한 형태로 가정한다.

- 바스켓의 앞면과 뒷 판의 위, 아래의 모서리는 수평임
- 연결부위 반지름은 20 mm 이하
- 쇼핑카트의 용량은 **[그림 12]**를 참조
- 바스켓의 안쪽표면적
- 바스켓의 4개의 위 모서리 들이 만드는 평평한 면적
- 바스켓의 4개의 아래 모서리 들이 만드는 평평한 면적

바스켓의 용량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 진다(만약 바스켓이 앞에 정의하였듯이 삼각기둥을 잘라낸 모습이 아니면 다른 적당한 계산법이 적용되어야 함).

a) 측정길이는 h1, h2 , h3 와 h4와 같다(**[그림 12]** 참조).

b) 측정길이 e는 앞면 위판의 중앙과 뒷면 뒤판의 중앙의 길이를 측정한다(**[그림 12]**와 **[그림 13]** 참조).

c) m 과 n을 측정하는 방법은 e에서 뒤판의 위쪽 꼭지점에서 e와 수직을 이루는 선이 m 이며 앞판의 아래쪽 꼭지점에서 e와 수직을 이루는 선이 n으로 측정한다.

d) 바스켓 용량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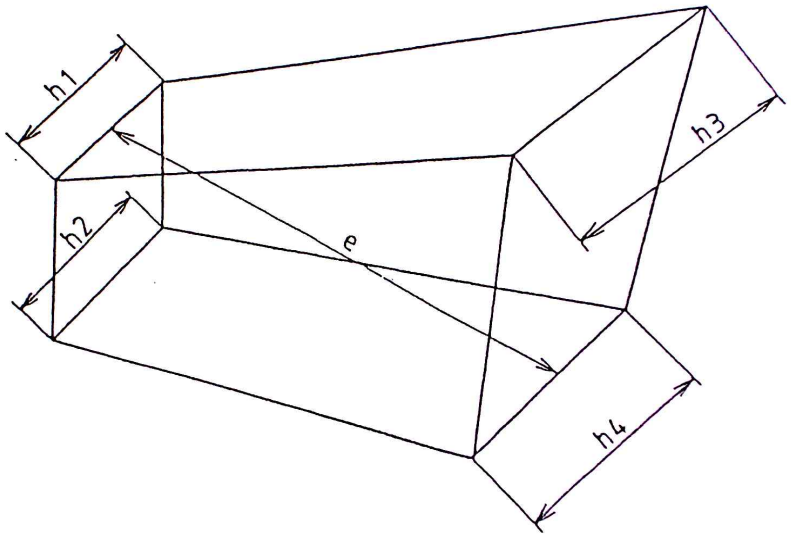

[그림 12] 바스켓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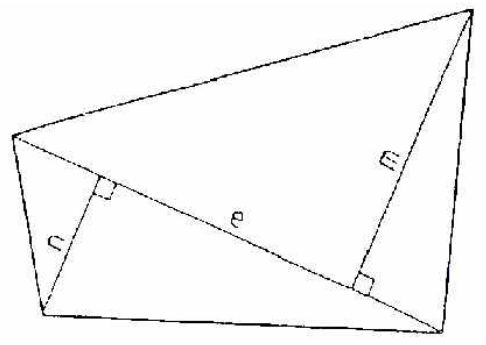

[그림 13] 바스켓 측정

$$V = S \times (h\ av)$$

$$(h\ av) = \frac{h1 + h2 + h3 + h4}{4}$$

$$S = e\frac{(n+m)}{2}$$

$$V = e(n + m)\frac{h1 + h2 + h3 + h4}{8}$$

5.3 쇼핑카트 강도측정 평균밀도 1,5 kg/dm^{3}인 자갈(32/64 mm 의 사이즈를 가진 자갈은 평균밀도가 1,5 kg/dm^{3}인 것으로 본다)을 쇼핑카트 4개의 끝 모서리가 만드는 면과 동일의 높이 까지 1시간 적재한 후 적재된 짐을 모두 내리고 A와 B를 측정하여 적재 전·후의 변형량이 7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4 안정성 바스켓을 비운 상태에서 A형은 그대로 B, AK, BK형은 어린이를 태우는 부분에는 어린이를 대신할 수 있는 물체를 넣고 유아를 태우는 부분에는 유아를 대신할 수 있는 물체를 넣어 20 mm 높이의 바가 둘러쳐져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판위에 회전캐스터들을 안정한 형태로 위치시킨 후 가로방향 10도, 세로방향 10도로 앞, 뒤로 기울여 전도 여부를 확인한다.

참고1 어린이를 대신할 수 있는 물체는 무게가 18 kg인 평행육면체로 밑판은 200 mm × 100 mm, 높이 114 mm로 어린이 의자의 중앙에 위치시킨다.

참고2 유아를 대신할 수 있는 물체는 무게가 12 kg인 철 기둥 형태이며 지름 120 mm, 높이 135 mm이다.

5.5 바스켓 벽 충돌시험 2개의 동일 쇼핑카트로 시험하며 앞면과 옆면을 시험한다([그림 14]). 모양의 충격물체를 바스켓의 양 끝 중앙지점에 1 m의 높이에서 떨어뜨려 변형치수가 40 mm 이하 여부를 확인한다.

참 고 충격물체는 철로 만들어진 100 mm인 원통으로 원형의 충격을 줄 수 있어야 하며 튀어나온 앞 곡면의 반지름은 200 m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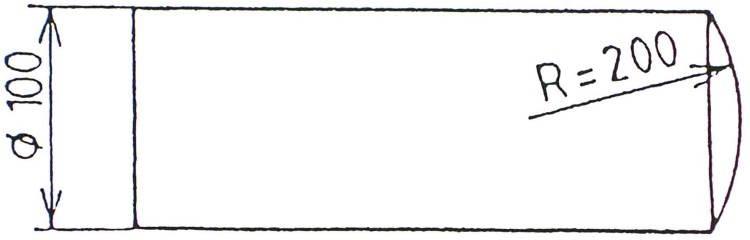

[그림 14] 충격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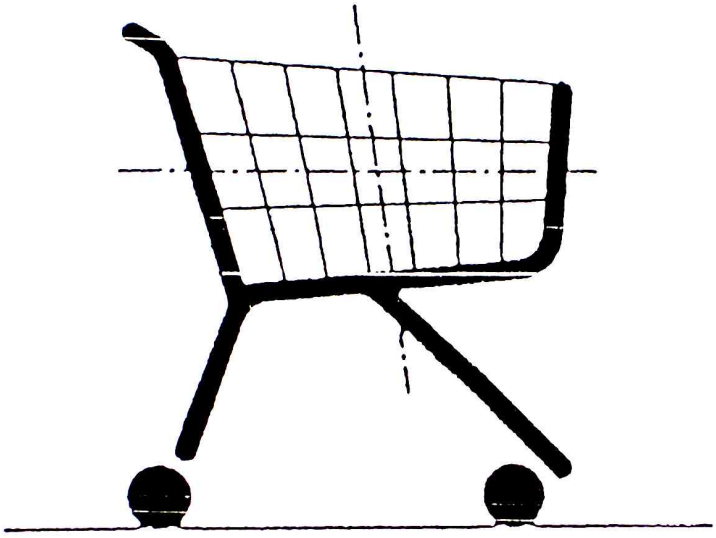

[그림 15] 충격저항시험

5.6 하부구조 강도

참고 : 하부구조 강도 테스트에서는 5.5 시험에서 사용되었던 쇼핑카트를 사용함

4.3.1에서 정의되어지고 [그림 7]로 설명되어진 D_1 , D_2 , D_3 의 치수를 측정 후 적절한 기구를 사용하여 500 N의 힘을 5분 동안 캐스터가 장착된 부위로 아래의 방향으로 힘을 가한다.

- 앞바퀴의 진행방향(D_1) 반대쪽으로
- 뒷바퀴의 진행방향(D_2) 반대쪽으로
- 앞, 뒤 바퀴 진행방향(D_3) 중간지점으로

힘을 제거한 후 각각의 치수를 재 측정하여 변형 유무를 확인한다.

5.7 내구성 시험 직경 5 mm의 철 막대를 40 mm 간격으로 16개를 고정 설치한 이동거리 6.5m, 속도 2.2 km/h의 **그림 16**과 같은 내구성 시험기에 5.3에 따라 4.3.5.1에서 정의한 것의 3분의 1의 하중으로 적절하게 적재하고 앞, 뒤 각 6000번 주행 후 4.3.5.3을 준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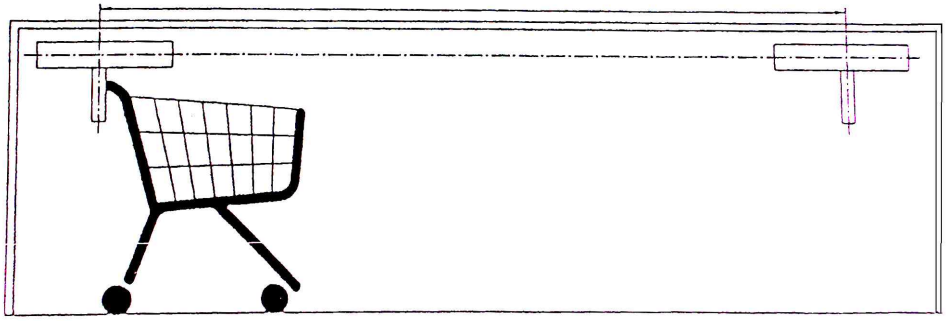

[그림 16] 내구성 시험

5.8 쇼핑카트 작동 시 필요한 힘 내구성 시험기의 수평의 철판 위에 쇼핑카트 최대 적재하중의 2분의 1을 5.3 방법에 따라 적재한 후 캐스터를 진행 방향의 앞쪽으로 정지시킨 후 [그림 17]에 따라 정지 물체를 제거할 시 65 N의 힘을 가하여 측정한다. 힘을 가하는 지점은 바스켓 앞부분의 위 중앙 지점이고 케이블과 도르래 등을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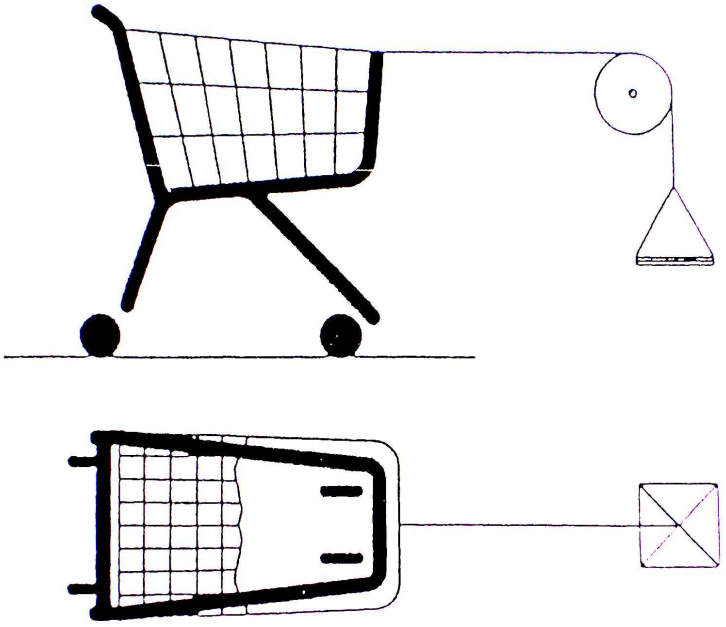

[그림 17] 쇼핑카트 작동시 필요한 힘 측정

5.9 하부구조의 앞부분 검사 10 mm 두께의 판 위에 지름 50 mm, 높이 190 mm인 원형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장치([그림 18] 참조)에 다음 사항에서 정의한 공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그림 19, 20] 참조).

- 바스켓 앞쪽면의 평면으로
- 이와 평행하게, 쇼핑카트 전반부 100 mm 부위에
- 높이는 200 mm 이내로(즉, 테스트 기구의 높이를 의미함)

평면 위에 설치된 시험 기구에 접촉되는 쇼핑카트 하부구조 바깥쪽 부분의 최소 반경은 5 mm 이상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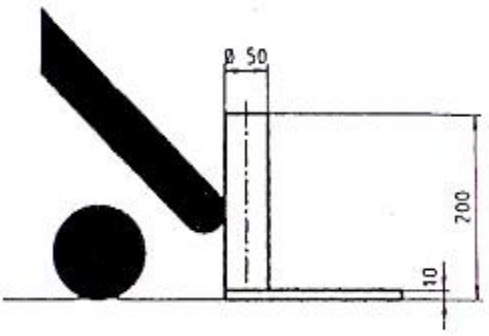

[그림 18] Test Pl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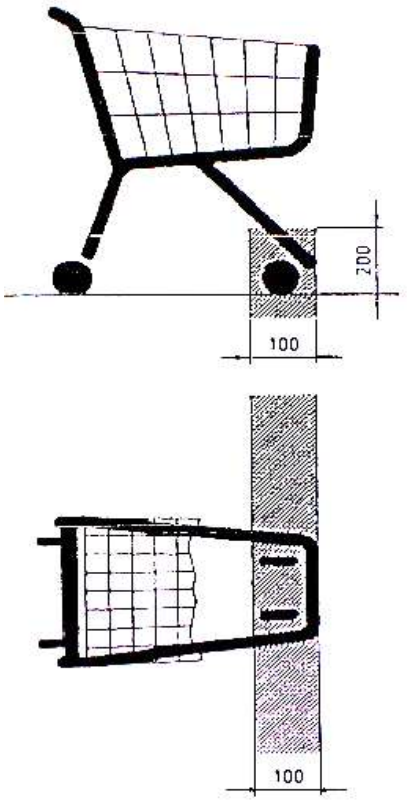

[그림 19] 하부구조 앞면의 검사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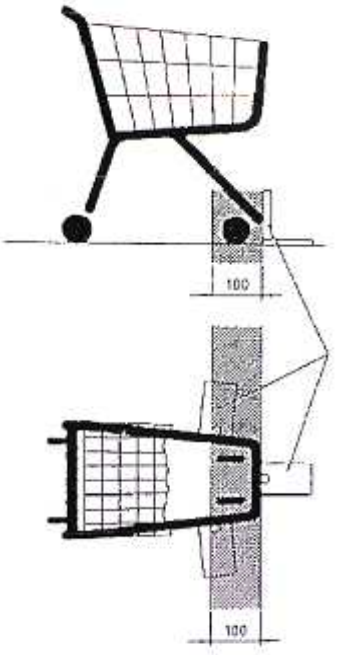

[그림 20] 둥근 모서리부분 검사

5.10 캐스터 장착부위의 충격강도 시험 쇼핑카트에 30 kg을 적재하고 앞으로 향하게 한 다음 경사 12°인 수평의 슬로프 위에서 앞바퀴에서 3 m 진행시켜 최소 75 mm 높이의 딱딱한 물체에 6번 반복 충돌시켜 캐스터, 연결부위, 용접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5.11 부식성 ISO 9227의 NSS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고 프레임(바스켓, 하부구조 그리고 뒷판)은 120 시간, 교체 가능한 부품(바퀴, 잠그는 것 등)은 48 시간 시험 후 빨간색의 녹 발생 유무를 확인한다.

5.12 유아를 태우는 시설물(요람)의 위치 시험 200 mm × 120 mm × 5 mm의 사이즈를 갖는 큰 보드와 50 mm × 120 mm × 5 mm의 작은 보드를 경첩으로 연결시켜 총 길이 250 mm의 장비를 사용하여 [그림 21]과 같이 요람에 세로로 놓여 져야하며 작은 보드의 가장 낮은 부분은 요람의 가장 낮은 부분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큰 보드의 α각을 적절한 각도기로 수평으로부터 측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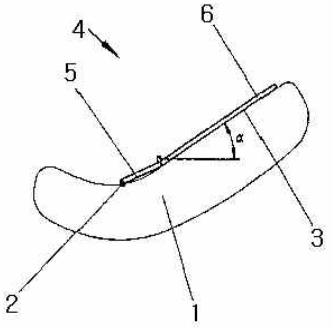

1. 유아를 태우는 시설물
2. 가장 낮은 부분
3. 허리 지지대
4. 테스트 장비
5. 작은 보드
6. 큰 보드

[그림 21] 유아를 태우는 시설물의 위치 테스트

6. 검사방법

6.1 모델의 구분 쇼핑카트의 모델은 종류별, 모양별, 용량별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용량별로 바스켓의 최대용량 및 최소용량의 두 가지로만 구성한다.

6.2 시료채취방법 필요한 경우 시료는 KS Q 1003에 따라 채취한다.

6. 시료크기 및 합부판정 조건 시료의 크기 및 합부 판정 조건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합부판정시 표시사항은 제외한다.

시료의 크기(n)	합격판정 갯수(Ac)	불합격판정 갯수(Re)
1	0	1

주) 시료의 크기(n) : 동 공급자적합성확인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하는데 필요한 시료의 최소수량 또는 질량

7. 표시사항

7.1 각 제품에는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0]의 규정사항 및 아래의 정보 사항을 포함한 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한다.

7.1.1 모델명

7.1.2 제조연월

7.1.3 제조자명

7.1.4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7.1.5 주소 및 전화번호

7.1.6 제조국명

7.1.7 바스켓 용량(L로 표시)

7.1.8 최대적재하중 (kg으로 표시)

7.1.9 안전주의 “경고” 문구는 14포인트(4.92 mm) 이상, 나머지 문구는 8포인트(2.811 mm) 이상이어야 한다.

7.1.10 핸들부위에 “컨베이어에서는 계속적으로 핸들을 붙잡고 있을 것”이라는 문구와 함께 아래의 그림을 영구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7.2 **사용설명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7.2.1 사용자의 안전하고 적절한 사용요령

7.2.2 유지 및 보수 시 필요사항

7.2.3 적재하는 물건의 크기와 무게의 제한

7.2.4 보관상의 주의사항

7.2.5 정기적인 검사 방법 및 시기

7.2.6 기타 필요한 사항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0034호(2007.01.24)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0290호(2008.06.23)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0978호(2009.12.30)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1-0553호(2011.12.1)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3-0350호(2013.08.08)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0686호(2015.12.30)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033호(2017. 2. 8)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0194호(2018. 6. 29)